

# 11.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5,227號 1996. 12. 31

## 주 요 골 자

- 가.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를 조성하는 경우 편입되는 농립의 전용시에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전 액 면제함(영 제52조의 2 ).
- 나. 개발제한구역 등 준농어촌지역에서 시행되는 농로 및 농업용수리시설의 보 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함(영 제82조의 2).

## 개 정 이 유

기업의 공장용지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『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실천계획』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주민의 부담경감 및 지원을 위하여 농로의 보강 등의 사업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